

都 · 農間 所得隔差의 再考

朱 鶴 中

▷ 目 次 ◁

- I. 序 言
- II. 所得隔差의 實證的 根據
- III. 都 · 農間所得比較의 問題點
- IV. 實效生活所得의 試算과 比較
- V. 要約 및 結論

I. 序 言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都農間 所得隔差에 관한 論考는 두가지 意味를 지닌다. 먼저 近年에 所得分配에 대한 學者의 관심이 크게 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所得分配研究에 있어서 그 問題意識을 중심으로 한 所得의 概念이 무엇인가에 관한 理論的 定說이 定立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試圖한 바 있다¹⁾. 이러한 여러가지 所得概念을 이용하여 所得을 計數的으로 調整하였을 때 어떠한 차이를 나타낼 수

있는가를 都農間所得의 調整比較로서 例示的으로 實證하는데에 그 첫째 意義가 있다. 둘째로 우리가 지니는 經濟社會現象에 대한 認識 및 先入觀은 急變하는 經濟社會에 있어서 未來指向的인 政策課題를 다루는데 하나의 沮害要因을 이루고 있는데, 이를 都農間 所得隔差에 관한 事例를 통하여 밝혀보려고 한다.

都農間 所得隔差의 問題는 우리의 意識 속에 뿌리깊은 것이라고 하겠다. 近代國家가 形成되기 이전에 封建社會에 있어서 農民의 生活은 支配者의 收奪 속에 아주 비참했던 것으로 描寫되어 있고 近代國家가 形成된 이후에도 近代의 意味의 經濟成長을 成功的으로 成就하지 못한 오늘날의 開發途上國家나 60年代 初이전의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都農間의 所得隔差는 農業의 比重으로 보아 그 當時에는 큰 문제였음을 否認할 수 없다. 그러나 오늘날 같이 農民의 相對的 比重이 先進國의 경우 全國民의 10%미만이며 우리의 경우라 하더라도 1980年 28.9%에 불과하고 都農間의 生活樣式과 生計費의 差異가 都市生活에 더욱 過重하

筆者：韓國開發研究院 研究委員

1) 朱鶴中, 「所得分配研究에 있어서 所得의 概念과 決定要因」, 朱鶴中 編, 『韓國의 所得分配와 決定要因(上)』, 韓國開發研究院, 1979, pp.32~62.

게 되는 경향에 비추어 都農間の 所得隔差를 再吟味하여 볼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着眼點을 가지고 이 論文에서 는 먼저 우리나라의 都農間 所得隔差의 實證의 根據를 檢討한 다음 都農間 所得比較에 있어서 既存統計資料가 지니는 概念上 및 調査統計上의 여러가지 문제점을 理論的 및 實證的으로 考察하기로 한다.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감안하여 都市勤勞者家口와 農家の 所得을 現存하는 資料가 허용하는 한 調整하여 이른바 實效生活所得의 概念에 따라 都農間 所得을 調整하여 비교해 보기로 한다. 특히 이 論文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다른 論文에서 지적한 바와같이²⁾ 統計資料의 分析의 利用에 좀더 세심하여야 한다는 統計資料研究(data research)를 중요시하는 것이 經濟學者의 바른 態度라는 점이다. 또한 우리 學界에 아직도 形成되지 않은 經濟統計研究에 대한 關心이 이 小考를 통하여 조금이나마 喚起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2) 朱鶴中, 「社會指標의 體系와 活用」, 『韓國開發研究』, 1981, 여름호, pp.50~51.

3) Abraham, W.I., "Observations on Korea's Income Distribution and the Adequacy of the Statistical Base", April 1976 (mimeographed) pp.4~7.

4) 經濟企劃院이 발표하고 있는 『主要業務指標』에는 <表 2>의 農家와 非農家所得比較를 農家所得에 대한 都市勤勞者家口所得의 比率를 사용하고 있다.

5) 例를 들어 農家所得과 都市勤勞者所得을 各各 1970年 不變價格基準 農家購入價格指數와 全都市消費者物價指數로 換算한 都農間 實質所得比較(都市勤勞者=100.0)를 같은 방법으로 1975年으로 基準年度를 바꾸어 몇개년만 비교하면 아래 表와 같이 작지 않은 차이가 나타나 「디플레이터」에 의한 偏倚의 정도를 實感케 한다.

基準年度變更에 따른 都農間所得隔差의 乖離 (단위 : %)

	1965	1970	1975
1970年 基準 (A)	106.9	67.2	86.7
1975年 基準 (B)	111.2	74.6	101.6
(A)-(B)	-4.3	-7.4	-14.9

II. 所得隔差의 實證의 根據

1. 國民所得資料에 의한 比較

都市·農村間の 所得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두가지 資料가 이용되고 있다. 하나는 國民所得資料를 이용한 農家와 非農家家計의 平均家口所得 및 1人當 所得比較이고³⁾ 다른 하나는 都市家計調査와 農家經濟調査資料上에 나타난 都市勤勞者家口와 農家の 家口所得 比較이다⁴⁾. 이러한 家口所得은 經常價格 또는 不變價格으로 比較된다.

<表 1>은 國民所得資料에 의한 經常價格 및 不變價格의 農家所得에 대한 非農家所得의 對比率과 1人當 所得의 對比率을 나타내고 있다. 農家와 非農家所得의 對比率은 基準年度 「디플레이터」(deflator)의 偏倚로 인하여⁵⁾ 전반적으로 不變價格比率이 1965년부터 1973年頃까지 다소 높은 경향이 있고 그 이외의 年度에는 약간 낮으나 時系列로 본 經常價格과 不變價格의 農家와 非農家와의 所得隔差는 비슷한 趨勢를 보이고 있다. 즉, 경상소득과 불변소득은 1965년의 48.9%와 61.4%로부터 1968년까지 37.2%와 49.5%로 所得差異가 확대되다가 作況에 따라 약간 起伏이 있으나 점차 개선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經常 및 不變價格의 1人當 所得對比도 家口所得의 對比와 같은 추세를 보이거나 家口所得對比率의 趨勢와의 차이는 年度別로 集計된 農家와 非農家の 家口員數變動에 起因하고 있다.

國民所得資料를 이용한 農家와 非農家部門

〈表 1〉 年度別 非農家에 대한 農業所得 對比率
(國民總生産 基準)

(非農家所得=100.0)

	家口所得		1人當所得		農外所得比率 (%)
	經常所得	1975年不變所得	經常所得	1975年不變所得	
1965	48.9	61.4	59.5	73.9	20.9
1966	45.4	63.7	53.1	75.4	22.1
1967	38.0	52.2	45.3	63.1	22.1
1968	37.2	49.5	44.1	57.6	23.5
1969	39.2	50.8	46.2	59.8	23.3
1970	45.5	54.0	49.6	59.5	24.2
1971	45.5	49.6	48.1	52.4	18.1
1972	45.8	49.2	51.2	54.5	17.7
1973	44.3	46.2	49.2	50.4	18.8
1974	52.0	53.3	54.5	55.8	19.6
1975	55.0	55.0	61.2	61.2	18.1
1976	56.3	56.8	60.9	61.7	20.3
1977	59.6	55.9	60.9	57.8	27.7
1978	61.9	51.3	63.7	52.5	28.1
1979	63.4	57.4	64.3	58.3	31.3

資料：韓國銀行, 『경제통계연보』, 1980.
農水産部, 『농가경제조사 결과보고』, 1978~80.

의 家計所得比較는 資料의 性格上 〈表 1〉의 右端에 나타낸 農家の 農外所得이 제외되므로 農家所得이 低評價되고, 1人當 農業所得은 就業者 基準이든 農業人口 1人當所得이든 간에 農業部門의 平均家口員數가 많으므로 農家所得이 더욱 낮게 나타나는 傾向이 있기 때문에 1人當 所得比較에 있어서 農家가 더욱 不利하게 表示된다.

반면에 非農家の 平均所得은 統計學的으로 極端値에 대하여 강한 偏倚를 나타내므로 少數의 高所得家口에 의하여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分析的인 立場에서의 都農間所得 比較에는 國民所得計定資料가 이용되는 경우가 例外的이라 하겠고 家計所得調査資料가 國民所得計定資料와 어느 정도의 一貫性을 지니고 있으면 都農間 家計所得은 家計調査結果로써 比較하는 것이 일반

적인 傾向이다.

2. 家計調査資料에 의한 比較

우리나라에 있어서 흔히 都農間 家計所得의 比較分析에 이용되는 資料는 〈表 2〉와 같은 都農間 家計所得의 對比이다. 이러한 對比表를 이용함에 있어서 흔히 간과되고 있는 점은 이 表가 함축하고 있는 都市勤勞者家計와 農家所得의 同質性이다. 都市勤勞者는 그 所得을 주로 勞動의 代價로서 받는 給與가 그 中을 이루는데 비하여 農家は 農耕에 投入한 自己勞動의 代價는 물론 農地와 中間投入에 따른 資本所得과의 複合物이다. 따라서 都市勤勞者와 農家の 所得이 平面的인 比較對象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전제되어야 한다. 엄밀한 의미에서 都·農間의 家計

〈表 2〉 年度別 都市勤勞者家口에 대한 農家所得 對比率(家計調査所得基準)

(都市勤勞者 家口所得=100.0)

	家口所得		1人當所得	
	經常所得	1975年不變所得	經常所得	1975年不變所得
1965	99.1	111.2	87.3	98.0
1966	80.2	89.6	70.6	78.8
1967	59.8	67.0	53.3	59.8
1968	62.6	67.1	56.5	60.7
1969	65.3	72.0	59.1	65.2
1970	67.2	74.6	60.6	67.3
1971	78.8	89.8	71.4	81.3
1972	83.0	95.3	76.6	88.0
1973	87.5	98.6	80.2	90.5
1974	104.5	105.7	96.2	97.3
1975	101.6	101.6	93.0	93.0
1976	100.3	97.9	91.5	89.2
1977	102.0	96.3	87.9	83.0
1978	98.3	89.7	85.5	78.0
1979	84.7	74.7	75.6	66.7

資料：經濟企劃院, 『도시가계연보』,
農水産部, 『농가경제조사 결과보고』.

所得比較는 같은 금액의 資本額과 同質同量의 勞動投入을 필요로 하는 農家와 自營業者家口가 그 比較의 대상이 되어야 하겠으나 可用資料가 制約되고 變數의 統制가 어려운 社會科學의 영역에서 이와 같은 적절한 比較對象에 대한 比較分析은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다. 都市勤勞者家口와 農家를 比較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 계층이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이를 對比함으로써 所得의 相對的 變化를 추적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表 2〉에 나타나는 家口平均所得의 전반적인 추세는 60年代 후반에 農家平均所得이 都市勤勞者家口의 그것에 비하여 크게 낙후되었다가 1971년부터 급속하게 향상되고 있다는 것이다. 不變價格 家口平均所得도 經常價格所得과 같은 추세를 보이기는 하나 70年代 후반에 이르러 都市消費者物價指數에 비한 農家購入價格指數의 相對的上昇으로 상대적인 낙후를 나타내고 있다. 이상과 같이 可用資料를 時系列로 보면 都市勤勞者家口와 農家の 平均所得間에 1966~1971年間과 1979년에 상당한 所得隔差가 統計上 나타나고 있음을 否認할 수 없다.

1人當 家口所得의 비교에 있어서 農家の 平均家口員數는 都市勤勞者의 그것에 비하여 많은 편이어서 農家所得이 보다 낮은 것으로 計算된다. 이상적으로는 家口所得 또는 消費水準의 測定은 家口員의 수에 따라 단순히 사

람수가 아닌 成人基準標準單位로서 換算되어야 하나 우리나라에 있어서 成人基準單位를 實證적으로 測定할 基礎資料의 缺如로 이를 算出할 수 없기 때문에 不完全하나마 外國의 資料를 利用하여 後에 검토해 보기로 한다. 〈表 2〉에 나타난 바와같이 1人當 經常價格 및 不變價格所得의 都·農間 比較는 家口當 所得比較보다 대체적으로 더욱 隔差가 擴大되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서 지적해 둘 것은 1人當所得의 都·農間 比較는 都農間の 生計費가 같다는 假定을 含蓄하여 계산된 것으로 都·農間の 生計費 차이를 감안하면 여기의 比較가 都·農間の 所得差異를 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외에도 都市勤勞者家計調査가 1977년까지 간헐적으로 변경한 所得上限線의 적용으로 平均所得의 推定에 下向偏倚(downward bias)가 있고 農家家計調査는 1단보 이상의 耕作農家를 그 調査對象으로 하여 1단보 미만의 耕作農家와 農業勞動者家口를 제외하였기 때문에 다소의 上向偏倚(upward bias)가 介在하고 있다. 또한 農家の 在庫評價, 消費者物價指數와 購入價格指數의 적용, 都農間, 生計費의 差異등 여러가지 문제가 介在하므로 이러한 比較에 留意되어야 할 것이다.

3. 農家所得의 調整比較

農家經濟調査를 통한 農家所得의 推定에 있어서 在庫評價上 資本利得이 포함되었다는 「아브라함」의 지적은 다음에 검토된 바와 같이 論理的으로 타당성이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農業經濟學者가 農家所得을 調整·推計하였고⁶⁾ 이것을 都市勤勞者所得과 比較하였

6) 姜奉淳·文八龍, 『農家所得의 決定要因分析』, 韓國開發研究院, 1977, pp.11~27.
潘性統, 『農家所得의 決定要因과 所得分配』, 朱鶴中編, 『韓國의 所得分配와 決定要因(上)』, 韓國開發研究院, 1979, pp.111~179.
文八龍·潘性統·「퍼킨스」, 『韓國의 農村開發』, 韓國開發研究院, 1981, pp.268~269, pp.384~386. 都·農間所得比較는 「퍼킨스」(D.H. Perkins)의 推計임.

다. 調整의 根據로서는 農産物 및 生産資材의 차이를 들고 있다. 世學者의 調整方法에는 在庫의 年度別 차이 및 過大評價와 農業「센서」와 農家經濟調査上의 耕作規模別 農家比率와 같이 각각 다르다.

〈表 3〉 年度別 都市勤勞者家口所得에 대한 農家所得調整値의 對比率

(都市勤勞者 家口所得=100.0)

	經常所得			1975年 不變所得		
	姜奉淳·文八龍 ¹⁾	潘性紈 ²⁾	「퍼킨스」 ³⁾	姜奉淳·文八龍 ¹⁾	潘性紈 ²⁾	「퍼킨스」 ³⁾
1965	93.8	94.7	97.4	102.8	103.6	106.6
1966	75.7	77.8	72.8	82.7	84.8	79.7
1967	56.1	56.6	55.8	62.7	63.3	62.3
1968	56.9	57.3	56.3	63.1	63.6	62.4
1969	59.8	60.2	56.0	65.2	65.6	61.0
1970	61.7	59.6	60.4	68.7	66.4	67.3
1971	74.0	73.9	70.1	82.7	82.7	78.6
1972	76.9	74.7	69.4	84.8	82.3	76.7
1973	79.0	75.3	77.6	82.3	78.6	80.9
1974	91.0	80.8	72.3	90.0	79.7	71.4
1975	98.5	88.2	84.1	98.6	88.2	84.2
1976	—	89.8	—	—	82.9	—
1977	—	91.8	—	—	79.7	—

資料：1) 姜奉淳·文八龍, 『農家所得의 決定要因』, 韓國開發研究院, 1977, pp.26~27.

2) 潘性紈, 『農家所得의 決定要因과 所得分配』, 朱鶴中 編, 『韓國의 所得分配과 決定要因(上)』, 韓國開發研究院, 1979. pp.120~122.

3) 文八龍·潘性紈·「퍼킨스」, 『韓國의 農村開發』, 韓國開發研究院, 1981, p.269 및 附錄③.

〈表 4〉 年度別 都市勤勞者家口 1人當所得에 대한 1人當農家所得 調整値의 對比率

(都市勤勞者 1人當所得=100.0)

	經常價格 調整所得對比率			1975年 不變價格 調整所得對比率		
	姜奉淳·文八龍	潘性紈	「퍼킨스」	姜奉淳·文八龍	潘性紈	「퍼킨스」
1965	82.4	83.4	84.9	90.2	91.2	93.0
1966	66.2	68.6	64.2	72.5	74.6	70.0
1967	50.0	50.5	49.8	55.9	56.5	55.6
1968	51.4	51.8	50.8	57.0	57.5	56.4
1969	54.1	54.5	0.6	58.9	59.4	55.2
1970	55.7	53.8	54.5	61.9	59.9	60.7
1971	67.0	67.0	63.5	75.0	75.0	71.1
1972	71.1	68.9	64.2	78.3	76.0	70.8
1973	72.3	69.1	71.2	75.6	72.2	74.3
1974	83.7	74.4	66.5	82.6	73.4	65.7
1975	90.2	80.7	77.0	90.2	80.7	77.0
1976	—	81.8	—	—	75.6	—
1977	—	79.1	—	—	68.7	—

資料：〈表 3〉과 같음.

〈表 3〉과 〈表 4〉가 나타내고 있는 바와 같이 姜奉淳·文八龍의 調整所得系列은 1970年 이후부터 가장 작게 修正된데 비하여 潘性統의 修正所得은 1969年까지는 작고 그 이후는 크며 「퍼킨스」(Perkins, D.H.)가 조정한 所得은 1971年 이후 가장 큰 幅으로 修正되었다. 즉, 姜奉淳·文八龍의 경우는 最低 1975年の 3.0%에서 最高 1974年の 13.1%, 潘性統의 경우는 1966年の 最低 3.1%에서 1973年の 最高 13.9%, 「퍼킨스」의 경우 1965年の 最低 2.7%와 1974年の 最高 30.9%이다. 農家 1人當 所得의 調整値도 비슷한 趨勢를 보이니 時系列上 對比率의 增減은 都市勤勞者家口와 農家の 平均家口員數가 각각 1965年の 5.5人과 6.3人에서 1977年の 4.8人과 5.5人으로 減少한 趨勢를 그대로 反映하고 있다.

이와 같은 農家所得의 調整에 있어서 가장 큰 項目은 農產物 在庫增減에 따른 이른바 資本利得의 제외이다. 이에 대하여는 다음 項에서 충분한 再檢討가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言及을 피하기로 한다. 姜·文兩教授가 지적한 農家經濟調查의 標本의 代表性에 대한것은 옳으나 都市勤勞者家計調查에 있어서도 家口主 職種의 比率로 보아 標本의 代表性이 문제시되며⁷⁾ 前者에 대하여는 調整을 가하고 後者에 대한 調整은 하지 않은 채 對比한다는 것은

7) Hakchung Choo, "Some Sources of Relative Equity in Korean Income Distribution: A Historical Perspective", *Income Distribution, Employment and Economic Development in Southeast and East Asia*, (papers and proceedings of the Seminar jointly sponsored by the Japan Economic Research Center and the Council for Asian Manpower Studies, December 16-20, 1974, Vol. I, July, 1975. pp.69~72.

8) 文八龍, 「農產物價格政策과 農家所得」, 『農村經濟』, 韓國農村經濟研究院, Vol.1, No.2, 1978. 8, p 40.

一貫性이 결여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끝으로 지적되어야 할 것은 都農間 所得比較에 있어서 이러한 調整이 갖는 의미이다. 이 調整所得의 比較에 의하면 都農間 所得比較은 최소한 1965年 이후 계속 惡化되는 추세를 보이고, 經常價格基準으로 1974年~1977年間 都市勤勞者所得보다 높았던 農家所得의 公式의인 集計에 대하여 하나의 큰 挑戰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調整된 農家所得으로 都市勤勞者家口所得에 비교하면 「工業化 위주의 開發政策過程에서 所得不均衡은 深化一路에 있다」⁸⁾고 할 수 있는 根據가 생기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農家所得調整의 正當性이야말로 면밀한 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하겠다.

Ⅲ. 都·農間所得比較의 問題點

1. 所得概念上的 問題點

都農間의 所得隔差가 部門間의 分配問題의 하나로서 提起된다고 보면 分配問題의 本質에 따라 所得의 概念이 生活水準 또는 福祉水準을 반영하도록 調整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都農間 所得比較에서 흔히 이용되는 課稅前 所得(income before taxes)을 統計資料가 許容되는 범위내에서 福祉水準을 반영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所得概念으로 調整하려는 試圖은 마땅한 學問的인 良識이라고 하겠다. 여기에서 都農間 所得比較에 있어서 概念的으로 어떠한 調整이 가져져야 할 것인가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가. 直接稅 및 公課金の 負擔

現行 租稅制度和 財政支出은 所得再分配機能은 물론 都農間 所得比較에 있어서도 重視되어야 할 큰 變數이다. 租稅制度에 의한 直接稅負擔은 可處分 所得을 결정하고 間接稅負擔은 實質的 消費水準에 負의 項目으로 作用한다. 반면에 財政支出에 의한 階層別 歸屬은 實質的 所得 또는 消費水準에 加算된다. 財政收支의 階層間 및 地域間 所得再分配機能은 이론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直接稅를 제외한 租稅負擔과 財政支出의 歸屬을 實證으로 推定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뒤따르고 있다⁹⁾. 그러므로 여기에서 現行 稅制上 例外的인 農業所得의 非課稅와 地方稅로서 農地稅의 賦課를 감안하여 直接稅와 公課金이 都農間 可處分所得比較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서만 검토하기로 한다.

農家經濟調査와 都市家計調査의 結果로 나타나는 所得階層別 租稅公課金の 負擔은 <表 5>와 같이 年度別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農家の 負擔率이 예외없이 낮으며 따라서 課稅前所得이 같다면 農家の 可處分所得이 都市勤勞者家口보다 높을 것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都市勤勞者의 租稅負擔率은 매년 조정되는 免稅點과 稅率에 의하여 결정되나 農家の 農地稅는 보다 間歇的으로 免稅點과 稅率이 調整됨으로써 年度別 租稅·公課金の 平均 負擔率은 물론 農家所得

<表 5> 農家·都市勤勞者家計의 租稅·公課金比率 (단위: %)

	農 家	都市勤勞者
1965	2.73	3.31
1966	2.59	3.38
1967	1.75	4.70
1968	1.69	7.91
1969	1.98	7.24
1970	1.28	6.78
1971	1.16	7.05
1972	1.00	6.60
1973	1.33	6.99
1974	1.29	1.87
1975	1.45	2.85
1976	1.69	3.60
1977	1.87	3.04
1978	1.68	2.38
1979	2.10	2.12

資料: 農水産部, 『農家經濟調査 結果報告』.
經濟企劃院, 『都市家計年報』.

階層에 따라 그 比率도 상당히 변동하고 있다는 것이다¹⁰⁾. 그 이유는 인플레이와 實質所得增加로 複合된 經常價格 所得增加가 대단히 높은 현실적 여건 아래 免稅點을 每年 조정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實效稅率을 높이는 結果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都市勤勞者의 租稅 및 公課金 負擔率에 비하면 전반적으로 낮아 可處分所得比率은 높으며 이로 인한 所得平準化 效果가 近年에 이르러 「지니」係數 再分配指數로서 2% 「포인트」 내외로 推定되어 있다¹¹⁾. 그러므로 都農間 所得比較에 있어서 이러한 都·農間 租稅와 公課金負擔의 差異는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

나. 生計費構成의 差異

都·農間 所得比較에 있어서 유의하여야 할 것은 都·農間에 生活樣式의 차이가 있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生計費의 차이는 所得比較에

9) Luc Henry de Wulf, "Fiscal Incidence Studies in Developing Countries: A Survey and Critique" IMF Staff Papers, Vol. XXII, March 1975, p.102.

10) 朱鶴中, 「農業租稅 및 補助政策과 所得再分配」, 『韓國開發研究』, 韓國開發研究院, 1979 가을호, pp.58~60 참조.

11) 上掲書 p.62, <表 17> 參照.

감안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차이점으로서는 첫째 農村에 필요하지 않는 都·市의 所要經費, 둘째는 都市·農村間 購買力評價(purchasing power parity)의 차이, 셋째 都農間 生活의 質的 差異등을 들 수 있다.

都市生活에 필요한 經費의 認定은 國民所得 概念을 本來의 福祉概念에 접근시키려는 近來의 理論的 試圖로서 都市 生活費支出 가운데 상당부분은 이른바 方便的 支出(regretables)로 간주하려는 것과 같은 格이다¹²⁾. 農村과 比較하여 都市生活 가운데 이에 해당하는 것은 都市家計所得 가운데 生計費의 차이에서 오는 報償의 성격의 부분으로 그 代表的인 것으로는 出退勤에 所要되는 交通費를 들 수 있다. 이로 인하여 같은 所得水準에서 農村家口가 都市家口보다 더욱 裕福한 生活를 누릴 수 있다. 문제는 農民은 논밭까지 걸어가서 作業을 하고 都市勤勞者는 버스나 電鐵을 타고 出退勤하는 都農間生活의 質的 差異를 어느 정도 差減하는 것이 적정한 報償水準인가 하는 것이다. 都市勤勞者가 직장 근처에 居住地를 정하면 문제가 없으나 대부분의 경우 工場規模나 産業立地 등의 배려로 職住間거리가 있기 마련인데 이러한 社會的 費用은 規模와 密集의 非經濟로서 이에 따르는 經費는 僻地手當과 같이 被傭者에게 報償되어야 한다.

都·農間 購買力評價의 차이를 감안한 所得의 調整比較는 「크라비스」(Kravis)教授에 의한

國家間의 所得比較에 各國間의 購買力評價를 감안하여 주는 것과 똑같은 論理的 根據를 지니고 있다¹³⁾. 다시 말하면 各國에 있어서 生計費構成品目的 폭넓은 價格차이는 先進國의 數千弗 所得이 後進國의 數百弗 所得의 열배의 生活水準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都農間 所得比較에서 住居費의 차이도 그러하다. 물론 都·農間의 住居費差異를 推定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며 같은 都市內에서도 그 위치에 따라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都市의 賃세나 月세가 두드러지게 비싸며 견해에 따라서는 이것이 都市生活의 便利한 便益을 享有하는 費用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國民經濟의 生産活動에 있어서 필요한 人力이 어떤 특정지역에 고용되었을 때 生活給으로서의 所得은 이러한 불가결한 費用의 차이를 報償하여야 한다¹⁴⁾.

그외에도 生必需品의 價格差異도 住居費의 차이를 고려하여 都·農間의 所得比較에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엔젤」係數의 比重이 높거나 우리나라처럼 流通構造가 복잡하여 段階마다 큰 商業「마진」이 붙는 여건 아래 基本的인 食生活에 소요되는 費用도 都·農間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都市勤勞者의 所得은 都市의 높은 生計費를 一部 반영하고 이에 대한 所得分은 正當한 都·農間의 所得差異로서 認定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都市生活의 필요경비와 都·農間 購買力評價의 차이를 포괄하여 일반적으로 論議되는 것이 都·農間 生計費의 차이이다. 비교적 可用統計와 統計的 分析이 풍부한 先進國에 있어서 <表 6>과 같이 中小都市는 10여%, 大都市는 20여% 가량으로 추정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後進國에 있어서는 都農間 生

12) Nordhaus, W. & Tobin, J., *Is Economic Growth Obsolete?* N.B.E.R. 1972, p.28.

13) Irving B. Kravis and Others, *A System of International Comparisons of Gross Product and Purchasing Power*, Johns Hopkins Univ. Press, 1975, Chap II.

14) 金秀坤, 『賃金과 勞使關係』, 韓國開發研究院, 1978, pp.55~65.

〈表 6〉 都農間 生計費差異의 國際比較(1973)

(農村=100.0)

	農 村	中小都市	大 都 市
韓 國	100.0	119.4	
日 本	100.0	110.9	121.9
카 나 다	100.0	115.0	128.8
美 國	100.0	117.1	

資料：徐相穆, 「貧困人口의 推計와 屬性分析」, 『韓國開發研究』, 韓國開發研究院, 1979 여름호, p.18.

活樣式的 현저한 차이와 流通構造上的의 문제로 더욱 그 차가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나라의 경우 〈表 6〉에서와 같이 1973年 약 20%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都農間 生計費 차이를 都市人力을 이용하는데 대한 追加費用으로 인정하거나 都農間所得이 지니는 購買力의 差異로써 감안하여 준다면 都市勤勞者家口所得은 農家所得에 비하여 平均 20%내외, 여기에 都農間의 生活的 質的 差異를 감안하면 이보다 약간 낮은 比率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 家口員數의 차이

都農間 所得比較에 있어서 看過되어서는 안 될 것은 家口員數의 차이이다. 〈表 7〉과 같이 家口員數의 차이는 이에 따른 就業人數의 차이를 의미하여 家口所得比較에 있어서 農家所得을 過大하게 하는 반면에 1人當 所得比較는 家口員을 같은 比重으로 다루어 過小하게 나타낸다. 따라서 이러한 計數上的의 偏差를 제거하기 위하여는 家口員數에 따른 生計費의 차이를 成人基準으로 標準化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成人基準單位에 대한 推

15) 金光錫·金大泳, 「單位消費者尺度의 推定試圖」, 『韓國開發研究』, 韓國開發研究院, 1979 가을호, pp.156~175.

定은 試圖된 바 있으나 有意한 結果는 현재 없기 때문에¹⁵⁾ 外國의 경우를 參考資料로 보던 〈表 8〉에서 알 수 있는 바와같이 家口員數 4名부터 6名까지의 變動範圍는 成人基準單位의 4名基準의 불과 40% 내외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 表가 비록 外國의 資料를 토대로하여 作成되었다고 하나 家口員 1人當 平

〈表 7〉 農家와 都市勤勞者家口의 平均家口員數

(단위: 名)

	農 家	都 市 勤 勞 者
1965	6.29	5.54
1966	6.22	5.47
1967	6.12	5.46
1968	6.02	5.44
1969	5.99	5.42
1970	5.92	5.34
1971	5.83	5.28
1972	5.71	5.27
1973	5.72	5.25
1974	5.66	5.21
1975	5.63	5.15
1976	5.54	5.05
1977	5.52	4.76
1978	5.38	4.68
1979	5.20	4.64

資料：農水産部, 『農家經濟調査結果報告』, 經濟企劃院, 『都市家計年報』.

〈表 8〉 美國의 貧困線生計費 標準單位(1974)

(非農家 2人家族 生計費=100.0)

家族數	非 農 家	農 家	平 均
1人	77.7	65.2	77.5
2人	100.0	84.3	99.4
3人	122.6	103.7	121.8
4人	156.9	134.0	156.0
5人	185.3	157.5	184.1
6人	208.6	177.5	207.1
7人以上	257.0	218.6	254.3

資料：U.S. Bureau of Census, "Characteristics of the Population Below the Poverty Level: 1974", *Current Population Reports*, Series p-60, No. 102, Table A-2의 資料로서 計算.

均所得의 概念이 成人 1人當基準에 비하여 얼마나 큰 分析上의 差異를 나타낼 수 있는가를 類推할 수 있다.

라. 平均値의 屬性

都市·農村間의 所得은 흔히 그 平均値로서 比較되고 있다. 平均値는 많은 觀測値의 代表치로서 統計學的 의미는 갖고 있으나 平均値에 해당되는 家口가 얼마나 되며 그 代表性이 어떠한가 하는 것은 별개의 問題이다. 比較分析에 이용되는 算術平均値는 그 統計學的 屬性의 하나로 극단치에 대하여 극히 민감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所得分布形態上 그 分散度가 클 경우에는 큰 의미가 없다. 흔히 利用되는 平均所得에 의한 都農間의 所得比較에 있어서 이러한 所得分布狀態의 都農間差異가 等閑視되고 있다¹⁶⁾. 따라서 農家와 都市勤勞者 家口間의 平均所得에 差異가 있다하더라도 상대적으로 分散度가 낮은 農家所得分布를 前提한다면 많은 比率의 農家が 都市勤勞者의 경우 보다 平均以上の 所得을 享有하고 있음을 排除할 수 없다.

2. 統計資料上의 問題點

가. 農家の 在庫評價

都農間 所得比較에 있어서 外國學者의 지적

16) 자세한 것은 朱鶴中, 「階層別 所得分布의 推計와 變動要因」, 『韓國開發研究』, 創刊號, 1979. 3, pp.37~41, 참조.

우리나라에 있어서 分配問題의 核心은 都農間과 같은 部門間의 소득격차라기보다는 部門內部에 있어서 家口間의 所得隔差에 초점이 있다고 하겠다.

17) William I. Abraham, "Observations on Korea's Income Distribution and the Adequacy of the Statistical Base", April 1976 (mimeographed), p.4.

으로 많은 物議가 있는 項目이 農家所得推計過程에서의 在庫問題이다. 「아브라함」(W.I. Abraham)은 우리나라의 “農家經濟調査의 數値는 在庫蓄積의 資本利得(capital gains in inventory accumulations)을 포함하기 때문에 經常所得(또는 經常所得의 貯蓄)을 測定하지 않으며 따라서 穀價의 上昇幅이 크면 클수록 포함된 資本利得의 比率이 크다”고 지적하였다¹⁷⁾. 사실상 「아브라함」의 지적은 그의 誤解로서 아주 특수한 경우, 다시 말하면 在庫가 2年 이상 계속 累增될 경우, 그 累增分에 대하여 발생하나 近刊된 研究에서 調整한 것과 같이 모든 在庫에서 발생하지는 않으며 현재 農家經濟調査結果로서 公刊되고 있는 在庫增減額으로서는 올바르게 修正할 수 없다. 「아브라함」의 主張을 해석해 보면 特定時期에 決定되는 穀物價格과 翌年에 移越되는 在庫量으로 결정되는 在庫評價를 注目한 反面에 農家所得決定의 會計學的方法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 즉, 資本利得에 대한 그의 主張은, 前年度의 年末在庫인 주어진 年度의 年初在庫額(I_{t-1})은 前年度의 農産物價格(P_{t-1})으로, 그리고 주어진 年度의 年末在庫額(I_t)은 그 해의 農産物價格(P_t)으로 評價되어 실질적인 在庫量의 變化가 없어도 在庫額增減(ΔI_t)은 農産物價格差異에 物量을 곱한 額數만큼 나타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當年初在庫量(Q_{t-1})과 當年末在庫量(Q_t)이 같다고 하더라도 $\Delta I_t = I_t - I_{t-1} = P_t \cdot Q_t - P_{t-1} \cdot Q_t = (P_t - P_{t-1})Q_t$ 이므로 인플레이와 高米價政策下에서는 $P_t > P_{t-1}$ 이 되어 $\Delta I_t > 0$ 으로서 資本利得이 存在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제시된 修正方法은 在庫評價額의 變化에서 오는 資本利得을 經常所得에서 差減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表 9〉 農家經常總生產推定の 例示的 資料

	現行調査方法			「아브라함」에 한 修正方法		
	物量	單價	價額	物量	單價	價額
期初在庫(I_b)	20	10	200	20	10	200
當年度生産(Q)	80	12	960	80	12	960
自家消費(C)	40		440	40		440
(在 庫 C_i)	(20)	(10)	(200)	(20)	(10)	(200)
(生産量中 C_o)	(20)	(12)	(240)	(20)	(12)	(240)
販 賣(S)	35	12	420	35	12	420
期末在庫(I_e)	25	12	300	25	10	250
在庫變動(ΔI)	5		100	5	10	50

이러한 意見은 세밀한 檢討가 없이 受容되고 있는 바 「아브라함」의 誤謬에 대하여 구체적인 數値로써 例示하여 그 正誤를 여기에 밝혀 둔다.

〈表 9〉는 農家經濟調査에서와 같이 總收入을 自家消費, 販賣 및 在庫變動으로 구분하였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物量과 單價를 例示적으로 표시하였다.

農家所得의 올바른 추정은 總生産額을 올바르게 계산하는 데에서 出發하며 그것은 두가지 면에서 접근될 수 있다. 즉, 한가지는 그해의 總生産量에 生産當時의 時價를 곱하여 계산하거나 在庫 및 生産量 중에서 自家消費, 販賣, 在庫變動을 合算하는 것이다.

〈表 9〉의 資料를 토대로 하면 現行農家經濟調査方法으로 當年度 總生産額(O)은 $O=C+S+\Delta I=C_i+C_o+S+\Delta I=960$ 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修正方法은 期末在庫를 期初在庫價格으로 修正하는 것이기 때문에 當年度 生産額은 같으나 $O \approx C+S+\Delta I$, 즉, $960 > 910$ 이 된다. 이 式의 差額 50은 在庫評價의 單位價

格의 修正에서 基因한 것이며 당해년도의 總生産과 다르다.

「아브라함」이 염려하는 資本利得은 前年度의 在庫가 2年以上 移越될 때 발생할 수 있다. 그것도 엄밀하게는 期初在庫가 當年度 自家消費量을 능가할 때에만 발생하나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耕作規模나 在庫量, 作況의 變動 및 餽養의 選好傾向 등으로 보아 이러한 가능성은 희박하다. 크게 양보하여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經營體로서의 農家家計가 在庫品の 時價變動에 따른 利得을 所得의 一部로서 計上하는 것은 國民所得計定上 經常所得을 추정하는데 있어서 一般企業體의 價格變化로 인한 超過利潤이 발생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불합리한 것은 아니다.

추측컨대 그가 제시한 在庫變動修正方法은 한마디로 會計學의 經濟學的 이용에 익숙하지 못하여 자기 主張의 論理的 歸結을 면밀히 檢討하지 않은 데에서 基因한 누구나 범할 수 있는 誤謬의 하나라고 하겠다.

나. 農家所得과 自家所有의 換價所得

우리나라에 있어서 都農間의 家口所得 比較에서 이때까지 論議되지 않은 것은 農家經濟調査에서 自家所有住宅에 따르는 換價所得이 제외됨으로써 農家所得이 過少評價되어 있다는 사실이다¹⁸⁾. 農家經濟의 特殊性으로 農家所得推定은 前述한 바와 같이 自家消費와 販賣에 대한 收入과 生産에 따르는 諸經費의 支出을 토대로 하여 所得을 推定하는 過程에 國民所得計定이나 都市家計調査에서 포함하고 있는 自家所有의 換價所得이 제외되어 있다. 이러한 自家 및 傳貰의 評價所得의 차이는 所得水準比較는 물론 消費比較에도 적지 않은 영

18) 農水産部, 經濟統計擔當官室, 『農家經濟 및 農産物生産費調査項目分類符號解説』, 1977, pp.41~55.

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都農間 所得의 比較에 있어서 農家所得에 포함되어야 할 住宅換價所得의 規模가 어느 정도인가를 推定하는 것은 대단히 복잡한 推計作業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를 調整한 數值를 提示하기는 어려우나 比較上의 一貫性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都農間 所得比較는 <表 10>이 나타내는 바와 같이 都市勤勞者家口所得에서 약 10%內外를 차지하는 傳貰 및 自家評價額을 調整시켜 比較하여야 할 것이다.

<表 10> 都市勤勞者家口の 家口所得對比 傳貰・自家評價所得의 比率

(단위: 千원, %)

	家口所得 (1)	傳貰・自家評 價所得 (2)	對 比 率 (2)/(1)
1963	80.2	8.3	10.4
1964	97.2	9.4	9.7
1965	112.6	11.2	10.0
1966	161.5	20.5	12.7
1967	248.6	30.5	12.3
1968	286.0	30.7	10.7
1969	333.6	37.8	11.3
1970	381.2	43.1	11.3
1971	451.9	51.8	11.5
1972	517.4	60.5	11.7
1973	550.2	65.6	11.9
1974	644.5	71.2	11.1
1975	859.3	72.8	8.5
1976	1,151.8	92.5	8.0
1977	1,405.1	134.2	9.6
1978	1,916.3	182.2	9.5
1979	2,629.6	292.6	11.1

資料: 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 『都市家計年報』, 1980, pp. 34~50.

19) 여기서 한가지 더 指摘되어야 할 것은 農家の 住宅換價所得의 漏落이 갖는 農業部門內의 所得分配(intra-sectoral distribution)에 미치는 영향이다. 農家の 自家保有率은 1977년에 96.9%로서 都市의 59.4%에 비하여 대단히 높은 수준이며 所得階層別로 보더라도 低所得階層의 自家保有率이 都市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다. 그러므로 住宅의 換價所得을 감안하지 아니한 資料로서 推計된 農家所得分布는 그 不平等度가 다소 過少評價되어 있다.

물론 <表 10>의 比較도 調整上의 上限을 限定하는 것일뿐이고 理想的인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農家住宅의 自家評價額이 都市의 그것에 크게 未達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앞으로 農家經濟調査에 農家の 自家所有에서 발생하는 換價所得이 推定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의 下限線을 提示하는 것이고 같은 換價所得이라 하더라도 都市와 農村에 있어서 똑같은 水準의 住居를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다. 가능한 調整方法으로는 農家所得에 自家所有에 따른 換價所得을 加算하여 주고 住居費를 生計費의 차이로서 감안하여 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본다¹⁹⁾.

다. 消費者物價指數에 대한 疑問

農家實質所得의 時系列分析이나 都農間 實質所得比較에 있어서 유의하여야 할 점은 經常價格所得을 不變價格所得으로 환산하는 「디플레이터」(deflator)의 선정이다. 일반적으로 農家所得을 經常價格에서 不變價格으로 換算하는데 이용되는 「디플레이터」는 都市消費者物價指數, 農家購入價格指數, 農家家計用品購入價格指數 등이다. 分析的인 研究에 있어서 어느 指數를 「디플레이터」로 삼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겠지만 資料의 可用性의 制約이 分析에 미치는 영향을 흔히 看過하는 경향이 있다.

都市消費者物價指數를 「디플레이터」로 사용할 경우 含蓄된 假定은 都・農間の 消費者購入品目과 그 加重値가 同一하고 선정된 基準年度가 價格構造와 消費類型에 있어서 代表的이라는 것이다. 이 「디플레이터」로써 調整한 不變價格所得의 都農間比較는 經常價格所得의 比較와 같은 것이므로 무의미하며 農村의 相

對價格과 消費者行態는 都市의 그것과 전혀 다르므로 農家의 不變價格所得을 나타내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 더우기 農家의 實質所得을 서울消費者物價指數로서 계산한다는 것은²⁰⁾ 앞에서 지적한 全都市消費者物價指數보다 價格構造와 消費行態의 차이에서 오는 더 큰 誤差를 內包하고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經常價格 農家所得의 「디플레이터」로서 이 용되는 農家購入價格指數는 원래 農業의 販賣價格과 購入價格의 「패리티」指數(parity ratio)를 구할 목적으로 作成되는 價格指數이다. 여기에는 農家家計用品은 물론 農業中間財와 賃料金까지 포함되고 있으며 1975年の 基準年度에 있어서 加重値는 家計用品이 562.7/1,000, 農業用品이 353.7/1,000, 農業賃料金이 83.6/1,000이다. 따라서 指數의 性格上 農業總收入의 「디플레이터」로서는 적합하나 總收入에서 中間財費用과 農業勞動力에 대한 人件費支出과 其他費用을 차감하고 經常價格 農家所得을 不變價格化하는데는 不適合하다.

물론 農家購入價格指數의 세 構成部分이 같거나 비슷한 比率로 變動한다면 이와 같은 「디플레이터」의 적용은 그대로 용인될 수 있으나 <表 11>과 같이 1962년부터 1979년까지의 農家購入價格指數의 平均上昇率이 農家家計用品購入價格指數의 平均上昇率보다 높다. 따라서 農家購入價格指數에 의한 不變價格農家所得의 算定은 높은 「디플레이터」의 적용으로 不變所得을 過少評價하는 부당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1976年 이후에 農業用品購入價格指數와 農村賃料金購入價格指數의 上昇幅이 農家家計用品을 크게 上廻하여 이러한

<表 11> 農家購入價格指數의 項目別 上昇率

(단위: %)

	總指數	農業用品	家計用品	農村賃料金
加重値	1,000.0	353.7	562.7	83.6
1962	10.8	14.4	9.9	11.1
1963	11.3	-0.7	11.1	26.3
1964	27.0	16.7	29.4	34.7
1965	33.5	62.3	18.4	13.2
1966	12.0	10.6	12.3	14.3
1967	7.8	3.5	10.2	17.6
1968	11.9	4.9	15.5	22.2
1969	14.5	21.7	9.4	21.7
1970	13.7	8.9	15.4	24.0
1971	12.9	15.7	10.6	19.9
1972	13.3	15.7	10.8	17.5
1973	9.2	15.1	5.0	10.6
1974	31.0	22.0	38.7	30.6
1975	23.9	17.8	26.7	28.7
1976	24.9	35.3	18.1	26.3
1977	17.1	19.7	14.0	24.3
1978	30.0	43.1	18.3	41.3
1979	13.7	-4.2	22.4	50.8
平均 1962~66	18.9	20.7	16.2	19.9
1967~71	12.2	10.9	12.2	21.1
1972~76	20.5	21.2	19.9	22.4
1977~79	20.3	19.5	18.2	38.8
1962~79	17.1	17.9	16.5	24.2

資料: 經濟企劃院, 『主要業務指標』.

偏倚는 近年에 더욱 심하고 이에 따라 近年의 不變價格 農家所得을 부당하게 낮게 評價하는 統計上의 不合理的을 內包하게 된다.

이상과 같이 考察해 볼 때 「디플레이터」로서 이론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農家購入價格指數중에서 農家家計用品購入價格指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經濟企劃院 調查統計局에서 調査發表하는 都市消費者物價指數와 農業協同組合中央會 調査部에서 集計發表하는 農家購入價格指數 중의 家計用品購入價格指數는 都農間의 所得比較를 위한 「디플레이터」로서 동일한 次元에서 같이 취급할 수 없는 統計調

20) 經濟企劃院, 『주요업무지표』, 1979, p.182.

査上の 두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價格指數의 調査項目에 있어서 <表 12>와 같이 都市消費者物價指數는 調査項目이 349個 品目인데 비하여 農家家計用品購入價格指數는 불과 94個 品目に 불과하다. 費目別로 보면 光熱費는 調査項目數가 비슷하여 비교될 수 있으나 다른 費用項目은 農家家計用品購入價格指數가 都市消費者價格指數보다 훨씬 적어 前者의 代表性이 극히 의문시된다.

둘째 農家와 都市消費者의 消費行態에 차이가 많아 두 指數의 加重値에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하나 農家家計用品購入價格指數는 農

<表 12> 都市·農村間 消費者物價指數의 調査品目數 및 加重値比較(1979年)

	都市消費者物價指數		農家家計用品購入價格指數	
	調査品目數	加重値	調査品目數	加重値
食料品費	131	458.0	32	225.4(126.8)
住居費	60	110.1	18	98.1(55.2)
光熱費	7	56.0	6	46.0(25.9)
被服費	57	92.5	14	175.4(98.7)
雜費	94	283.4	24	455.1(256.1)
合計	349	1,000.0	94	1,000.0(562.7)

註: ()속의 數値는 農家購入價格 및 賃料金指數를 1,000.0으로 보았을 때의 加重値임.
資料: 農水産部, 『농림통계연보』, 1980.
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 『물가연보』, 1979.

21) 한 가지 더 附記하여 볼 것은 두 價格指數上 乖離가 발생할 수 있는 時代的 背景의 影響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것이다. 1974年以後 國內外要因으로 인하여 우리의 慢性的인 인플레이가 더 큰 刺戟을 받은 것은 否認할 수 없다. 이러한 가운데 8.3措置等 一連의 強경한 政策的 對應으로 經濟安定을 目的으로 追求하였고 政策當局은 物價上昇에 대단히 敏感한 反應을 보인 바 있다. 이에 따라 다소의 副作用이 物價指數에 미치지 않았나 하는 憂慮가 없지 않다. 이에 따라 政策的 關心이 되었던 消費者物價指數와 그렇지 않았던 農家家計用品購入價格指數의 乖離는 결코 우연한 것이 라고만 할 수 없다. 이러한 推測이 假說로서 認定된다면 政策的 配慮가 統計에 미친 影響이 計量分析을 歪曲할 수 있는 可能性에 대하여서 警戒을 기울여 하여서는 안되겠다.

<表 13> 消費項目別 消費者物價 上昇率의 都農間比較

(단위: %)

	1970~1973年間平均			1974~1978年間平均		
	都市	農村	差異	都市	農村	差異
總指數	5.0	4.2	0.8	15.4	19.2	-3.8
飲食料品費	5.5	5.5	0.0	17.8	21.2	-3.4
被服費	5.5	4.0	1.5	13.2	20.0	-6.8
住居費	4.6	4.7	-0.1	11.3	14.3	-3.0
光熱費	4.3	4.1	0.2	17.0	13.6	3.4
雜費	4.3	4.5	-0.2	13.1	20.1	-7.0

資料: 經濟企劃院, 『물가연보』, 1979.
農水産部, 『농림통계연보』, 1980.

家消費支出形態를 잘 반영하지 않는 듯하고 따라서 <表 12>와 같이 都市消費者物價指數의 加重値에 차이가 크다. 또한 加重値가 큰 農家家計用品의 價格變動에 農家購入價格指數가 민감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하여 준다. 특히 被服費와 雜費項目은 品目數에 비하여 加重値가 비교적 높아 선정된 品目の 代表性和 그 品目價格의 騰落이 指數의 변동에 작지 않은 影響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과 같은 이론적 偏倚의 可能性은 두 物價指數의 期間別 上昇率에도 반영되어 있다. <表 13>에 의하면 1967~72年間 都市消費者物價指數가 農家家計用品購入價格指數의 움직임과 비슷한 動向을 보이며 前者가 後者보다 약간 높은 上昇率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1974~79年間은 農家家計用品購入價格指數가 都市消費者價格指數보다 上昇率이 年平均 5% 「포인트」 높다. 後期에 있어서 이와 같은 두 價格指數上의 乖離는 調査品目の 代表性이 의심스러운 被服費와 雜費로서 대부분 說明되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은 統計調査上의 문제와 같은 脈絡을 이루고 있다²¹⁾.

Ⅳ. 實效生活所得의 試算과 比較

都市勤勞者家口와 農家の 平均所得으로 비교되는 都·農間 所得比較는 前述한 바와 같이 여러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들을 要約·列擧하면 家計調査上의 所得概念, 都·農間의 生計費, 平均家口員數, 租稅公課金の 負擔 등에 差異가 있고 이 차이를 감안한다면 都農間 實效所得과 그 可處分所得은 名目所得과는 달리 評價되어야 한다. 여기에서는 먼저 이러한 차이를 調整하여 都·農間의 實效所得을 試算하는 방법을 略述하고 이에 따라 試算된 實效生活所得을 비교함으로써, 都農間 所得隔差에 대한 再考와 올바른 認識을 환기시켜 보기로 한다.

1. 調整方法

여기에 試圖된 都農間 所得의 調整比較는 그 實效生活所得으로 換算하여 時系列比較와 「크로스·섹션」比較로 구분하였다. 前者는 可用資料의 制約으로 理想的인 所得調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次善의 方法으로 두가지로 구분하여 試算하였다. 두가지 接近이 다같이 都農間의 生計費와 家口員數 및 租稅·公課金の 차이를 감안하였다는 데에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나 첫째 試算에서는 都市勤勞者 家口所得에 포함된 傳貰 및 自家所有에서 오는 評價所得에 調整을 가하지 아니하였고, 둘째 試算에서는 農家所得의 概念과 一貫性있게 自家所有에서 발생하는 評價所得을 都市勤勞者家口所

得에서 差減하여 實效生活所得으로 試算·比較하였다.

이 方法이 지닌 脆弱點은 1974年 美國에 있어서 貧困線을 推定하는데 이용된 成人消費基準單位와 都農間의 生計費차이에 관한 資料를 이용하였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이러한 換算値가 과연 우리나라의 實情에 적합하느냐 하는 疑問이 提起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調整基準値는 첫째, 美國의 平均値가 아닌 貧困階層에 적용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開發途上國인 우리 現實에 가까우며 둘째, <表 8>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美國은 都農間의 生計費가 어떤 先進國보다 平準化되어 있어 우리 現實에 비추어서도 하나의 保守的인 調整値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外國資料의 援用은 이 論文이 目的하는 바 하나의 試算으로서 都農間 所得比較에 있어 온 混亂을 바로 잡는 데 次善은 될 것으로 생각한다.

「크로스·섹션」資料의 比較는 分配問題와 관련된 都農間의 所得比較에 있어서 平均所得의 比較보다도 都市勤勞者와 農家の 部門內分配狀態(intrasectoral distribution)가 감안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試圖한 것이다. 「크로스·섹션」資料에 의한 比較는 1976年을 基準으로 하였고 都市家計調査結果 발표되는 所得階層別 分類에 自家評價額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表 15>의 試算Ⅱ와 比較될 수 있는 所得階層別 實效生活所得比較에 限定하였다.

2. 時系列 比較

前述한 바와 같은 實效生活所得의 調整方法으로서 試算된 調整所得과 調整可處分所得을

要約, 比較한 것이 <表 14>와 <表 15>이다. 두 表의 어느 試算에 의하든지 名目所得이나 名目可處分所得의 都·農間 비교는 농가의 비교적 많은 家口員數를 감안하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認識하고 있는 바와 같이 都農間の 所得隔差가 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比較表에 나타난 都·農間 所得比較는 1976년까지의 都市家計調査의 所得上限線 設定과 間歇的 調整의 영향으로 인하여 解釋上에 문제가 다소 있다. 예를 들면 1967년부터 1969년까지의 급격한 도시근로자 가구의 평균소득의

증가는 1963년부터 1967년까지 所得上限線이 年間 50萬원 이상이던 것이 1967년에는 年間 150萬원으로 조정되었고 다시 1969년에는 200萬원으로 조정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70年代初, 특히 1974년의 낮은 都市勞働者家口의 평균소득은 年間 240萬원의 所得上限線이 작용한 下向偏倚때문이라고 해석된다. 그러므로 비교적 有意한 比較時點은 1965年, 1970年과 1976年 前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²²⁾.

都·農間 實效生活 所得의 調整比較를 보면 試算 I의 경우 농가의 상대적으로 많은 家口

<表 14> 都·農間所得의 調整과 時系列比較(試算 I)

(단위: 千원, %)

	名目所得			實效生活所得			名目可處分所得 ¹⁾			實效生活可處分所得 ²⁾		
	農家	都市勤勞者	對比率(都市=100.0)	農家 ²⁾	都市勤勞者	對比率(都市=100.0)	農家	都市勤勞者	對比率(都市=100.0)	農家	都市勤勞者	對比率(都市=100.0)
1963	93.2	80.2	116.2	95.5	80.2	119.1	91.2	77.5	117.7	93.5	77.5	120.7
1964	125.7	97.2	129.3	127.5	97.2	131.2	122.9	94.7	129.8	124.7	94.7	131.7
1965	112.2	112.6	99.6	117.3	112.6	104.2	109.1	109.6	99.5	114.1	109.6	104.1
1966	130.2	161.5	80.6	137.1	161.5	84.9	126.8	157.3	80.6	133.5	157.3	84.9
1967	149.5	248.6	60.1	160.5	248.6	64.6	146.9	240.1	61.2	157.7	240.1	65.7
1968	179.0	286.0	62.6	196.1	286.0	68.6	175.9	269.2	65.3	192.8	269.2	71.6
1969	217.9	333.6	65.3	239.7	333.6	71.9	213.6	315.4	67.7	234.9	315.4	74.5
1970	255.8	381.2	67.1	280.9	381.2	73.7	252.5	361.4	69.9	277.3	361.4	76.7
1971	356.4	451.9	78.9	393.1	451.9	87.0	352.2	427.4	82.4	388.5	427.4	90.9
1972	429.4	517.4	83.0	479.2	517.4	92.6	425.1	491.3	86.5	474.4	491.3	96.6
1973	480.7	550.2	87.4	534.1	550.2	97.1	474.3	520.3	91.2	527.0	520.3	101.3
1974	674.5	644.6	104.6	751.3	644.6	116.6	665.7	634.8	104.9	741.6	634.8	116.8
1975	872.9	859.3	101.6	972.4	859.3	113.2	860.2	838.8	102.6	958.3	838.8	114.3
1976	1,156.3	1,151.8	100.4	1,282.3	1,151.8	111.3	1,136.7	1,116.4	101.8	1,260.6	1,116.4	112.9
1977	1,432.8	1,405.1	102.0	1,523.1	1,405.1	108.4	1,406.1	1,369.0	102.7	1,494.7	1,369.0	109.2
1978	1,884.2	1,916.3	98.3	2,012.3	1,916.3	105.0	1,852.6	1,870.7	99.0	1,980.7	1,870.7	105.9
1979	2,227.5	2,629.6	84.7	2,416.8	2,629.6	91.9	2,180.6	2,573.8	84.7	2,369.9	2,573.8	92.1

註: 1) 名目所得에서 租稅公課金을 控除한 數值임.

2) 名目農家所得에 都市·農家の 家口員數에 해당하는 미국의 빈곤선 標準農家·非農家の 家口員數別 標準單位(表 8)를 적용한 농촌對比 도시표준단위의 비율을 곱한 수치임.

3) 實效生活所得에서 租稅公課金을 控除한 수치임.

資料: 經濟企劃院, 『도시가계연보』.

農水産部, 『농가경제조사결과보고』.

22)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의 階層別 所得分布를 1965, 1970, 1976년에 대하여 그 推計가 시도되었다. 朱鶴中, 「階層別 所得分布의 推計와 變動要因」, 朱鶴中 編, 『韓國의 所得分配와 決定要因(上)』, 韓國開發研究院, 1979, pp.83~86 참조.

〈表 15〉 都・農間所得의 調整과 標準化實效生活所得의 時系列比較(試算 II)

(단위 : 千원, %)

	名目調整所得			實效生活所得			名目調整可處分所得 ³⁾			實效生活可處分所得 ³⁾		
	農 家	都 市 勤 勞 者 ¹⁾	對 比 率 (都 市 = 100.0)	農 家 ²⁾	都 市 勤 勞 者	對 比 率 (都 市 = 100.0)	農 家	都 市 勤 勞 者	對 比 率 (都 市 = 100.0)	農 家	都 市 勤 勞 者	對 比 率 (都 市 = 100.0)
1963	93.2	71.9	129.6	95.5	71.9	132.8	91.2	69.3	131.6	93.5	69.3	134.9
1964	125.7	87.8	143.2	127.5	87.8	145.2	122.9	85.3	144.1	124.7	85.3	146.2
1965	112.2	101.4	110.7	117.3	101.4	115.7	109.1	98.4	110.9	114.1	98.4	116.0
1966	130.2	141.0	92.3	137.1	141.0	97.2	126.8	136.8	92.7	133.5	136.8	97.6
1967	149.5	218.2	68.5	160.5	218.2	73.6	146.9	209.7	70.1	157.7	209.7	75.2
1968	179.0	255.2	70.1	196.1	255.2	76.8	175.9	238.4	73.8	192.8	238.4	80.9
1969	217.9	295.8	73.7	239.7	295.8	81.0	213.6	277.6	77.0	234.9	277.6	84.5
1970	255.8	338.2	75.6	280.9	338.2	83.1	252.5	318.4	79.3	277.3	318.4	87.1
1971	356.4	400.1	89.1	393.1	400.1	98.3	352.2	375.6	93.7	388.5	375.6	103.4
1972	429.4	457.0	94.0	479.2	457.0	104.9	425.1	430.8	98.7	474.4	430.8	110.1
1973	480.7	484.6	99.2	534.1	484.6	110.2	474.3	454.7	104.3	527.0	454.7	115.9
1974	674.5	573.5	117.6	751.3	573.5	131.0	665.7	563.8	118.1	741.6	563.8	131.5
1975	872.9	786.5	111.0	972.4	786.5	123.6	860.2	766.0	112.3	958.3	766.0	125.1
1976	1,156.3	1,059.2	109.2	1,282.3	1,053.2	121.1	1,136.7	1,023.8	111.0	1,260.6	1,023.8	123.1
1977	1,432.8	1,270.9	112.7	1,523.1	1,270.9	119.8	1,406.1	1,244.1	113.0	1,494.7	1,244.1	120.1
1978	1,884.2	1,734.1	108.9	2,012.3	1,734.1	116.0	1,852.6	1,699.7	109.0	1,980.7	1,699.7	116.5
1979	2,227.5	2,337.0	95.3	2,416.8	2,337.0	103.4	2,180.6	2,296.3	95.0	2,369.9	2,296.3	103.2

註 : 1) 都市勤勞者의 名目調整所得은 名目所得에서 傳賃 및 自家評價額을 控除한 數值인.

2) 〈表 14〉와 같은 方法에 의함.

3) 名目調整所得에서 租稅・公課金을 控除함.

資料 : 〈表 14〉와 같음.

員數를 감안하여도 生計費差異로 인하여 實效生活 總所得은 〈表 14〉에 提示된 名目家口所得比較에 비하여 10餘% 「포인트」가량, 實效生活可處分所得으로는 實效生活總所得比較보다 1~3% 「포인트」 정도가 農家에 有利하게 평가되어 있다. 이와 같이 보면 1960年代 후반과 특히 1967년에는 都・農間의 所得隔差의 문제가 實效生活所得의 概念으로서도 있었으나 1972년부터는 오히려 農家의 平均實效生活所得이 높은 것으로 推定되고 있다.

都市家計와 農家所得의 統計調査上 自家評價額에 대한 都農間의 實效性生活所得을 比較한 〈表 15〉의 時系列 試算 II에 의하면 대체적

으로 試算 I 과 같은 추세를 보이거나 都・農間의 所得比較에 있어서 試算 I 보다 農家所得水準이 10여% 「포인트」가량 높게 나타나 있다. 이리하여 1966년부터 1971年頃까지 農家의 實效生活平均所得과 可處分所得이 도시근로자구보다 낮다가 1972년부터 1978년까지는 農가가 앞서고 1979년에 實效生活農家所得이 약간 낮은것으로 추정되어 있다. 〈表 15〉에서 주목되는 것은 1973年 부터 農家의 實效生活所得과 可處分所得間의 差異가 최초의 平均値로서는 크지 않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農地稅의 免稅點調整이 정부의 高米價政策과 名目所得增加에 相應하게 調整되지 않는데서 오는 현

상이라고 하겠다²³⁾.

3. 「크로스·섹션」分析

위에서 시도한 時系列分析은 분석방법상 都·農間の 평균소득이 이용되었다. 平均値는 階層別分布를 나타내지 못하므로 特定年度를 선정하여 「크로스·섹션」分析을 시도함으로써 實效生活所得의 調整比較가 所得階層別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여기에서 검토하기로 한다. 對象年度는 도시가계조사의 上限線設定에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나라의 所得分配와 관련된 餘他的 研究와 관련지을 수 있도록 1976年을 選定하였다.

上述한 바와 같은 實效生活所得의 試算Ⅱ의 調整方法을 이용하여 소득계층별로 都·農間

實效生活所得 및 可處分所得을 都農間の 生計費와 家口員數의 차이로 調整·比較한 것이 <表 16>이다. 試算에 의하면 低所得農家の 實效生活所得이 高所得農家에 비하여 높게 調整되고 都農間の 그 對比率도 低所得農家일수록 보다 有利하게 나타나 있다. 農家の 實效生活所得과 그 可處分所得의 比較는 80萬원 이하의 農家所得階層에는 中立的으로, 80萬원~170萬원의 農家所得階層에는 다소 有利하게, 그리고 170萬원 이상의 農家所得階層에는 다소 不利하게 計算되어 있다. 1976年에 있어서 農家の 租稅 및 公課金의 歸着은 中間所得階層에 상대적으로 작고 高所得階層에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약간의 再分配效果를 보이고 있다.

더우기 1976年 현재 年間所得 80萬원이하의

<表 16> 都·農間所得의 調整과 階層別所得比較(1976)

	名目 調整 所得			實效 生活 所得			家口比率(%)	
	農 家	都市勤勞者	對 比 率 (都市=100.0)	農 家	都市勤勞者	對 比 率 (都市=100.0)		
50萬원미만	360.4	409.1	88.1	468.5	409.1	114.5	12.6	14.2
50萬~80萬	664.0	717.3	92.6	746.3	717.3	104.0	24.4	30.1
80~110	949.8	1,021.3	93.0	1,045.7	1,021.3	102.4	22.5	22.7
110~140	1,248.1	1,329.9	93.9	1,382.9	1,329.9	104.0	14.5	13.3
140~170	1,545.2	1,653.1	93.5	1,687.4	1,653.1	102.1	8.9	6.8
170萬원이상	2,437.3	2,756.2	88.4	2,359.3	2,756.2	85.6	17.1	12.9

	名目 可處分 所得			實效生活可處分所得			家口比率(%)	
	農 家	都市勤勞者	對 比 率 (都市=100.0)	農 家	都市勤勞者	對 比 率 (都市=100.0)		
50萬원미만	358.6	406.6	88.2	466.7	406.6	114.8	12.6	14.2
50萬~80萬	658.0	711.2	92.5	740.3	711.2	104.1	24.4	30.1
80~110	939.6	1,006.4	93.4	1,035.5	1,006.4	102.9	22.5	22.7
110~140	1,231.8	1,300.8	94.7	1,366.6	1,300.8	105.1	14.5	13.3
140~170	1,517.5	1,593.7	95.2	1,659.7	1,593.7	104.1	8.9	6.8
170萬원이상	2,374.4	2,586.8	91.8	2,296.4	2,586.8	88.8	17.1	12.9

23) 朱鶴中, 「農業租稅 및 補助政策과 所得再分配」, 『韓國開發研究』, 韓國開發研究院, 1979. pp.50~51.

도시근로자가구비율이 44.3%로서 농가의 37.0%보다 현저하게 높을 뿐만 아니라 이에 해당되는 근로자가구수는 1,211千家口로 농가의 923千家口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推定되어 下位生活水準家口の 數는 都市가 農家보다 오히려 많다.

1976年 이후에도 就業構造가 農家와 農業의 比重이 낮게 계속적으로 變化함으로 그 實效生活所得이 농가의 그것에 못미치는 低所得 都市勤勞者家口가 더욱 증가하였을 것이며 앞으로도 계속 증대될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1970年代 후반과 같은 수준으로 농가의 相對所得이 유지된다면 分配問題의 중요한 문제는 都·農間의 所得差異에 있는 것이 아니라 實效生活所得의 観点에서 생활의 壓迫을 받으며 高所得階層과의 生活隔差를 느끼고 사는 低所得 都市勤勞者階層에 있음을 재삼 認識할 수 있다.

V. 要約 및 結論

都農間의 所得隔差에 관한 오랜 認識은 經濟社會의 構造의 變化와 이에 따르는 새롭고 보다 중요한 문제가 發生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보는 우리의 視角을 타성에 젖게 하는 경향이 있다. 급속한 成長에 의하여 中進國에 이른 오늘날까지 均衡發展을 이루지 못한 것 중의 하나가 可用統計이며 統計上制約으로 因하여 都農間所得隔差에 대한 認識이 옳고 그른 것인지가 識別이 곤란한 實情이다. 흔히 社會科學研究의 방향은 問題의 認識과 假定에서 出發하고 그 認識이 옳고 그르든지간에 이

를 뒷받침 할 수 있는 實證的 根據은 어느정도 蒐集할 수 있다. 社會科學研究에 있어서의 이러한 伸縮性은 充分히 감안되어야 하며 보다 客觀性을 띠우기 위해서는 兩論을 가름할 수 있는 分析的檢討에 힘쓰는 學問的 態度가 있어야 하겠다.

都農間 所得比較에 있어서 現存하는 統計資料로써 올바른 比較가 어려운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都農間 所得隔差는 사실로서 認定되고 근래 이에 관한 研究는 農家在庫의 過大評價分의 除去, 都農間 不變價格 所得比較, 都農間 1人當 所得比較 등으로 統計調査됨으로서 公表된 都農間 所得比較보다 더한 隔差가 있는 것으로 研究發表되어 왔다. 그러나 이미 考察한 바와같이 이러한 農家所得의 調整에 있어서 在庫評價의 問題는 推計方法의 直觀的 誤解로서 부당하고 不變所得의 比較는 1974年 이후 物價指數上的 일관된 乖離를 나타내어 農家所得의 「디플레이터」(deflator)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統計上的 문제점이 있으며 平均 家口員數에 의한 1人當 所得比較는 生計費所要에 있어서 規模의 經濟를 도의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와같은 農家所得의 調整과 都市勤勞者家口所得과의 비교는 農家所得을 부당하게 過少評價하는 偏倚를 內包하고 있다.

반면에 都市勤勞者家口의 所得에는 農家所得에 포함되지 않은 傳貫 및 自家所有에 의한 換價所得이 포함되고 都市家口所得에 상당한 生計費的 給與部分이 포함되어 있다. 直接稅 및 公課金의 부담은 분명히 都市勤勞者家口가 農家보다 많고 아직도 間接稅 歸着에 관한 分析은 없으나 間接稅도 消費形態로 보아 都市家計의 부담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포

팔적인 都農間の 所得分布差로 인하여 農家와 都市勤勞者家口의 個別家口所得比較에 있어서 극단적인 都市高所得家口를 제외하면 낮은 所得階層에서는 農家比率이 상대적으로 작고 中上位 所得階層에는 農家比率이 많은 現象을 나타낸다. 都農間 所得比較에 있어서 農家所得의 比較優位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要因은 오늘날까지 都農間 所得分析에 있어서 排除되어 왔다.

이리하여 오늘날 分配問題로서 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部門內 階層間 所得隔差나, 都市勤勞者家口와 自營業者 및 經營者家口間的 所得隔差, 産業構造的 變化에 따른 都市貧困 등 새로운 分配問題에 注目하지 않고 20年前이나 60年代 後半에 부각되었던 問題인 都農間所得隔差를 아직도 중요시하는 것은 問題意識에 대한 時代的 錯誤로서 바람직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 없다.

問題意識을 새롭게 가지고 實證的 分析을 試圖하려 할 때 직면하는 것은 可用資料의 制約으로서 上述한 바와같은 調整을 통한 實効生活所得의 推計로서 보다 올바른 都農間の 所得比較를 試圖하는데 있어서도 그 例外는 아니었다. 그러므로 上述한 바와같은 여러 調整項目을 可用資料의 制約 속에 가능한 한 調整하고 아직도 定說化되지 않은 調整比較의

試圖이기 때문에 都市勤勞者家口와 農家間的 所得比較를 調整하여 두가지 試算을 제시한 것이다. 이 두 調整試算에 있어서 試算表는 극히 보수적인 입장을 固守하려고 意識적으로 努力하였으며 또한 分配問題의 要諦인 部門內 分配에 미치는 影響까지 감안하려고 하였다.

그 結果 60年代後半에 都農間 實効生活所得의 隔差는 分配의 問題로서 그 重要性이 인정되나 1970~71年과 1979年을 제외하면 큰 問題가 될 수 없으며 70年代의 高度成長過程에서 都農間の 所得隔差가 擴大되었다고 斷言하기 어렵다. 1976年 「크로스·섹션」分析이 妥當性을 지닌다면 都農部門의 最高所得階層을 제외한 國民大多數에게는 상술한 3個年에 있어서도 都農間の 實効生活所得상의 隔差를 느낄 수 있을 정도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 分析이 지니는 問題點은 可用資料의 制約으로 國內外資料를 活用한 次善의 試圖라는 것이다. 可用資料의 制約은 앞으로 보다 많은 經濟專門家가 統計資料研究에 參與하고 統計生産機關의 活動이 政策的으로 支援되어야 解決될 課題이다. 당분간은 可用한 資料를 잘 利用하여 次善의 試算으로 斷片的으로나마 우리의 經濟現實을 보다 바르게 照明하는 努力이 계속되어야 하겠다.

▷ 參 考 文 獻 ◁

經濟企劃院, 『도시가계연보』, 1980.
 _____, 『主要業務指標』, 1979~81.
 _____, 『물가연보』, 1979.
 農水産部, 『농가경제조사결과보고』, 1978~80.

_____, 『농림통계연보』, 1980.
 農水産部 經濟統計擔當官室, 『農家經濟 및 農産物生産費 調査項目分類符號解説』, 1977.
 韓國銀行, 『경제통계연보』, 1980.

- 姜奉淳·文八龍, 『農家所得의 決定要因』, 韓國開發研究院, 1977.
- 金光錫·金大泳, 「單位消費者尺度의 推定試圖」, 『韓國開發研究』, 韓國開發研究院, 1979 가을호.
- 金秀坤, 『賃金과 勞使關係』, 韓國開發研究院, 1978.
- 文八龍, 「農產物價格政策과 農家所得」, 『農村經濟』 Vol. 1, No.2,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78.
- 文八龍·潘性紈·「퍼킨스」, 『韓國의 農村開發』, 韓國開發研究院, 1981.
- 潘性紈, 「農家所得의 決定要因과 所得分配」, 朱鶴中編, 『韓國의 所得分配과 決定要因(上)』, 韓國開發研究院, 1979.
- 徐相穆, 「貧困人口의 推計와 屬性分析」, 『韓國開發研究』, 韓國開發研究院, 1979 여름호.
- 朱鶴中, 「農業租稅 및 補助政策과 所得再分配」, 『韓國開發研究』, 韓國開發研究院, 1979 가을호.
- _____, 「所得分配研究에 있어서 所得의 概念과 決定要因」, 朱鶴中編, 『韓國의 所得分配과 決定要因(上)』, 韓國開發研究院, 1979.
- _____, 「階層別 所得分布의 推計와 變動要因」, 『韓國開發研究』, 創刊號, 韓國開發研究院, 1979.
- _____, 「社會指標의 體系와 活用」, 『韓國開發研究』, 韓國開發研究院, 1981 여름호.
- Abraham, W. I., "Observations on Korea's Income Distribution and the Adequacy of the Statistical Base", April 1976 (mimeographed).
- Choo, Hakchung, "Some Sources of Relative Equity in Korean Income Distribution: A Historical Perspective", *Income Distribution, Employment and Economic Development in Southeast and East Asia*, Japan Economic Research Center and the Council for Asian Manpower Studies, July 1975, Vol. I.
- Kravis, Irving B. and others, *A System of International Comparisons of Gross Product and Purchasing Power*, Johns Hopkins Univ. Press, 1975.
- Luc Henry de Wulf, "Fiscal Incidence Studies in Developing Countries; A Survey and Critique", *IMF Staff Papers*, Vol. XXII, No.1, March 1975.
- Nordhaus, W. & J. Tobin, *Is Economic Growth Obsolete?*,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1972.
- U.S. Bureau of Census, "Characteristics of the Population Below the Poverty Level: 1974", *Current Population Reports*, Series p-60, No.102.